

주식거래내역 신고 안내

□ 주식거래내역 신고

- 근 거: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
- 목 적
 - 재산등록제도만으로는 주식과 같이 단기에 차익을 실현하고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 재산의 경우 재산 형성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움
 - 따라서, 주식 거래내역 신고를 통해 재산등록제도를 보완

□ 신고방법

- 대상자: 재산공개대상자(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)
- 신고대상 주식
 - 본인 및 배우자, 본인의 직계존·비속이 보유한 상장·비상장 주식
 - * 단,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, 외조부모, 외손자녀, 외증손자녀(법 제4조제1항) 및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(법 제12조제4항)는 제외
- 신고대상 기간
 - '15.1.1.~'15.12.31. 사이에 있었던 거래내역
 - * '15.1.1. 이후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최초신고일부터 12.31까지의 거래내역
- 신고 방법
 - **주식변동사항신고서(참고1)**를 작성하고,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, 주식 거래일, 종목, 수량,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**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**을 첨부
- 제출 기간: 재산변동신고 기간에 맞추어 **등록기관에 제출**
 - * 등록기관이 인사혁신처인 경우 윤리과로 **'16.2.29까지** 제출

※ 등록기관의 윤리업무 담당자께서는 해당 기관 공개대상자에게 주식거래내역신고 제도를 안내해 주시고, 주식변동신고서를 취합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

주식변동사항신고서

■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의5서식] <개정 2012.8.23>

주식변동사항신고서

신고인 (등록 의무자)	성명(한글)	생년월일		휴대전화	
	소속	직위		직급 등	
	주소				
변동 내역	구분	종전		현재	
	주식종목수	상장	/ 비상장	상장	/ 비상장
	보유총액	(천원)		(천원)	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거래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등록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 |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, 주식의 거래일, 종목, 수량, 실거래가격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

작성방법

1. '직급 등' 란 작성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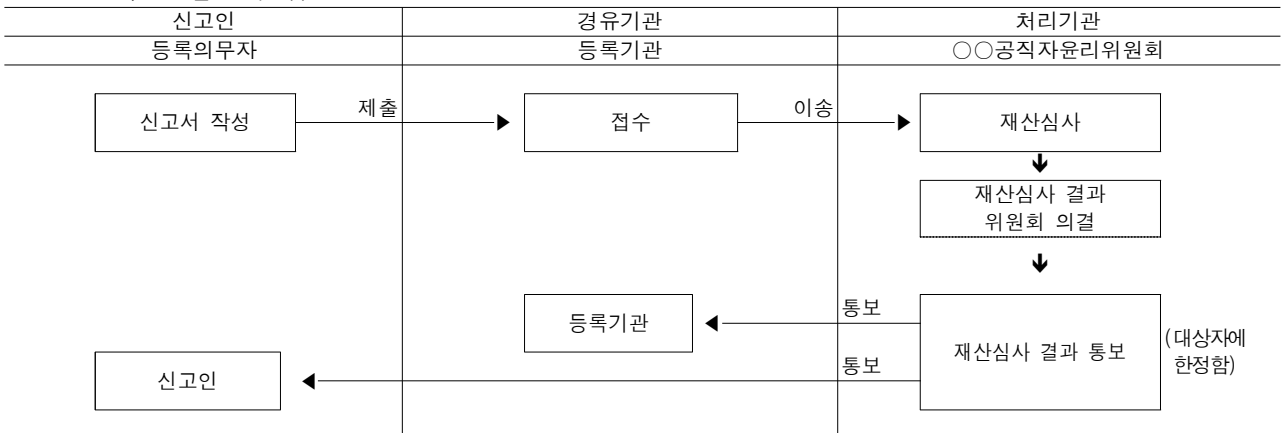
-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. 다만,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·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. [예: 고위공무원 가등급]
-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(외무공무원의 경우)을 적으십시오. [예: 서기관, 8등급]

2. 변동내역

- 주식 종목수는 종전 재산신고 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종목 수와 재산등록일 기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종목 수를 적으십시오(상장, 비상장 구분 기재).
- 보유 총액: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액을 합산하여 적으십시오.

업무 처리절차

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